

#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유급에 관한 규정(3-5-5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' 96. 3. 11., 2000. 11. 29., 2011. 9. 22., 2018. 3. 1.)

제2조(이수학점)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은 학기제를 택하여 학칙 제38조의 직전학기 성적에 따른 능력별 학점취득제는 적용받지 않는다.(개정 ' 96. 3. 11., 개정 2000. 11. 29., 2011. 9. 22., 2018.2.12.)

제3조(출석점수) 삭제 (개정 ' 96. 3. 11)(삭제 2000. 11. 29)

제4조(유급기준)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유급이 확정된 자는 다음 학기의 진급을 불허한다.

1. 각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.0미만인 자.(개정 98. 3. 2)(개정 2000. 11. 29)
2. 의과대학의 경우, 각 학기별 수강과목 중 1과목 이상 낙제인 자.(개정' 98.3.2., 2000. 11. 29., 2018.3.1.)
3. 간호대학의 경우 각 학기별 전공과목 중 1과목 이상 낙제인자.(개정 2000. 11. 29., 2011. 9. 22., 2018.3.1.)
4. 삭제 (개정 ' 96. 3. 11)(삭제 2000. 11. 29)

제5조(학점인정) 유급된 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무효가 되며 해당학기의 전 과목을 재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 2000. 11. 29)

제6조(재시험 및 추가시험) 재시험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. 재시험 응시자격은 각 학년 성적 평균 평점이 2.0이상인 자로, 낙제과목이 1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교과목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.(개정 ' 96. 3. 11)(삭제 2000. 11. 29)(개정 2001. 12. 1)(개정 2011. 9. 22)

제7조(제적) 동일학기 연속 3회 또는 총 4회 유급자는 제적한다.(삭제 2001. 12. 1)(신설 2007. 3. 22)(개정 2009. 3. 1)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199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6조의 개정사항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